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745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6월 08일
발 의 자: 최호정, 강석주, 김영철,
김종길, 김태수, 소영철,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최민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직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 반영 및 조항의 현실화(안 제7조)
- 나.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부여(안 제29조제20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 공무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근무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공무원은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u>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u></p> <p>② 삭 제</p> <p>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 략)</p> <p>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p> <p>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 략)</p> <p>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p>	<p>제7조(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 공무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의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p> <p>제10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 ----- ----- -----.</p> <p>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p>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특별휴가) ① ~ ⑱ (생
략)

<신 설>

-----.

제29조(특별휴가) ① ~ ⑱ (현행
과 같음)

⑳ 공무원은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 단순자구 수정, 제29조제20항 규정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 의 회 사 무 처 재정분석과
재 정 분 석 과 장 이 선 희
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
추 계 분 석 관 선 동 규

☎ 02-2180-7952

e-mail : abasiclife@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